

부산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나554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백진규, 유형준

피고, 항소인 B협회

변론 종결 2018. 11. 15.

판결 선고 2018. 12. 6.

제 1 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6가단31931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 12. 21. 접수 제170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21. 접수 제170284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8865호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5. 11. 11. 피고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3) 피고는 형식상 확정된 이 사건 제1 판결에 기하여 2015. 12. 2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 2016나43213호로 이 사건 제1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소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 25. 2016다268145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위

1) 부산 기장군 F 임야 4,959㎡에 관하여 1999. 7.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임야는 2011. 6.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와 부산시 기장군 G 임야 660㎡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9202호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5. 10. 28. 피고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3) 피고는 형식상 확정된 이 사건 제2 판결에 기하여 2015. 12. 2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2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2016나43220호로 이 사건 제2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소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6. 2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제1, ② 판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은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②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E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추완항소는 원고가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판결을 취소한 각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H이 설립한 I 협회(이하 '기존교단'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재산인데, 피고는 기존교단과 동일성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 및 을가 제36호증, 제38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대표자인 J는 '원고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음에도 E이 원고 명의의 송달영수인신고서, 고소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E을 고발하여,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년형제14739호, 같은 청 2016년 형제21323호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② 부산 기장경찰서 수사과 K 외 1명이 2016. 9. 5. 14:00경 L종교단체 내 접견실을 방문하여 원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양쪽 10개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였다.

③ 아울러 위 경찰관들은 위 사람으로부터 '본인은 J를 상대로 하는 민·형사소송과 관련된 전 사건의1) E(M생)을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도록 위임하는 한편필요한 경우 서면제출 등의 필요한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에 본인명의를 사용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와, 이 사건 각 판결의 각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나43213, 2016나43220) 및 이 사건 제1심(부산지방법원2016가단319315)을 포함한 39개 사건에 관하여 E에게 답변서, 준비서면, 송달장소 및송달영수인 신고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④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은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2항 기재 지문을 송부받아 1975. 11. 7. 원고의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 채취한 지문과 대조한 결과 상호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6. 9.

29. 이를 부산지방법경찰청장에게 통보하였다.

⑤ 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 12. 7. '2016. 9. 5.경 및 11. 22.경 등 2차례에 걸쳐 신양촌 내 거주 중인 원고로부터 십지 지문을 직접 채취하여 감정한바 원고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사경 입회하에 E에게 각종 법률서류 작성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E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소송수행 권한을 위임받은 E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적법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수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2,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도록 위임하였고, E은 그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점, ② 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제1, ②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 로 회복하는 것이고, 원고가 E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바는 없는 점, ③ 조직폭력배 N 두목 O은 1995년경 그의 부하에게 원고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대외 활동이 어렵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E은 L종교단체 산하 P 주식회사의 총무과장으로로서 상당 기간 L종교단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 등 실무를 처리해온 자인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소송 수행을 위임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② 판결은 각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②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②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② 판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추완항소는 원고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 제10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E을 통하여 법무법인 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각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② 부동산은 기존교단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피고는 기존 교단과 동일성 있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 제1, ②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1 내지 3, 8, 10, 16 내지 18, 20, 21, 27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기존 교단과 동일성 있는 단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영, 판사 김상희, 판사 박재인

부동산의 표시

1. 부산 기장군 Q 임야 3,471㎡
2. 부산 기장군 F 임야 4,299㎡. 끝.

1) '전사건을' 또는 '전사건은'의 오기로 보인다.